

	<h2 style="margin: 0;">동강생활관 사생수칙</h2>	규정번호
		6-09
		총페이지
		5

#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수칙은 동강생활관 운영규정 제6조에 의거 사생들이 생활관 내에서 학문연구와 교양을 함양하며, 건전한 단체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입사생 선발기준 및 제한)** ① 입사신청 자격은 매학기 등록을 마친 신입생과 재학생으로서 학업에 전념하고 품행이 단정한 자로 건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 한다.

② 입사 선발 기준과 방법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.

1. 1순위 : 지체부자유자
2. 2순위 : 국내유학생
3. 3순위 : 광주광역시, 전남·북외 거주자(주민등록등본 1부 구비)
4. 4순위 : 기타, 기숙 신청자
  - 가. 4순위는 학과별 지원비율과 거리를 기준하여 선발
  - 나. 재학생 중 전학기 기숙한자는 선발기준에 따라 우선 배정
  - 다. 기한 내 생활관비 미납자는 선발이 취소되며, 즉시 후 순위자로 승원

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사할 수 없다.

1. 학칙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
2. 생활관에서 퇴사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
3. 법정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 또는 단체생활에 적합지 못한 질병 보유자
4. 휴학 중인 자
5.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자
6.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

**제3조(사실배정)** 입사실 배정은 관장이 결정하며, 배정된 호실은 관장의 허가 없이 입사생들 간에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.

**제4조(사생증)** ① 입사생은 사생증을 언제나 휴대하여야 하며 관계직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.

② 사생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사유서를 제출하고 재발급 받아야 하며

퇴사 시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.

③ 사생증을 재발급 받을 때에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.

④ 사생증은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.

**제5조(외부인의 제한)** ① 입사생은 관장의 허락 없이 생활관내에 외부인을 대동할 수 없다.

② 관장의 허락을 받아 외부인은 생활관 출입 전 방문자 명단을 기록 후 출입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공용물 사용)** ① 관장의 허가 없이 생활관 내 공용물의 이동 및 변경을 금한다.

② 본인의 과실로 인한 화재나 기타의 요인에 의한 공용물의 파손, 손실, 분실한 경우 해당 입사생이 변상하여야 한다.

**제7조(관리)** 입사생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.

1. 공공시설물은 항상 아껴서 사용한다.
2. 전기, 수도, 냉난방 설비 등의 고장 및 시설물 파손 발견시 사감에게 즉시 보고한다.
3. 생활관의 각종 시설 및 물품을 파손한 경우 원상회복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해당 입사생 또는 호실 단위로 부담하여야 한다.
4. 입사생은 개별 호실내의 화기단속 및 청소 책임을 진다.
5. 입사생은 열쇠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6. 입사생은 개인용품에 대한 관리책임과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.

**제8조(보건과 위생)** ① 입사생은 공동생활에서 요구되는 질병의 예방수칙을 이행하여야 한다.

② 질병이 발생한 경우 즉시 치료하여야 하며 모든 치료경비는 본인 부담으로 한다.

**제9조(금지행위)** 입사생은 관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.

1. 외부인에 대한 숙박 및 숙식 제공 행위
2. 남학생은 여학생생활관을, 여학생은 남학생생활관의 출입금지
3. 음주, 소란, 폭행, 절도, 도박 및 사행성 행위 일체
4. 텔레비전, 오디오, 악기 및 기타 소음으로 면학분위기를 해치는 행위
5. 허용하지 않은 전열기 기구(다리미, 전기장판, 커피포트 등) 및 연소기구의 사용
6.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또는 사용
7. 실내에서의 개인적인 취사행위
8. 허가 없이 관내의 모든 기물의 이동
9. 낙서, 부착물의 첨부, 광고물의 무단전시 및 배포

- 10. 식당 이외의 장소에서의 취식행위
- 11. 승인 없는 사생 단체 활동
- 12. 타인의 우편물 수취 또는 개봉행위
- 13. 동물 사육 행위
- 14. 그 밖의 생활관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

**제10조(일과표)** 입사생은 다음의 일과표를 준수하여야 한다. 단 계절에 따라 관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.

내 용	시 간
개 문	06:00
(아침) 점 검	07:00
조 식	07:40~09:00
(중 식) (자유식)	(11:40~13:40)
석 식	17:40~19:00
(저녁) 점 검	23:00
폐 문	24:00

- 제11조(점검)** ① 입사생의 점검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, 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.
- ② 입사생은 점검 시간에 각 실에 대기하여 점검을 받아야 하며, 외출하여 부득이하게 저녁 점검 시간까지 귀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- ③ 점검은 관장 또는 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시행한다.
- ④ 점검자는 인원점검, 환경정리(방청소), 전열기기 사용 여부, 기타 수칙 및 지시사항 이행 등을 점검한다.

**제12조(식사)** 입사생은 식사에 관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1. 식사는 규정된 시간에 하여야 한다.
- 2. 식사 시 반드시 사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.
- 3. 식당에서 제공되는 음식은 식당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.

**제13조(생활관비 납입 및 환불)**

- 1. 생활관비라 함은 입사비, 관리운영비, 급식비, 보험료 등 생활관 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말한다.
- 2. 입사생은 생활관비를 매 학기 입사 전 지정된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.
- 3. 지정된 입사일 이후에 입사하는 입사생의 생활관비는 기간에 따른 해당 관리비와 여분의 급식비를 [별표1]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.

4. 입사 이후 학기 중 휴학이나 자퇴 등 자진 퇴사시는 기간에 따른 해당 관리비와 여분의 급식비를 [별표2]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.
5. 운영규정 제19조(강제퇴사)에 의한 퇴사자의 생활관비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불하지 않는다.

**제14조(광고 및 게시)** ① 입사생은 생활관 내에 광고물을 게시하거나 배부하고자 할 때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지정된 장소를 이용하여야 한다.

- ② 입사생은 광고 및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,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.

**제15조(행사 및 집회)** 생활관내의 모든 행사 및 집회는 일주일 전에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, 관장이 정한 시간 내에 마치도록 한다.

**제16조(우편물)**

1. 보통 우편물은 우편물 관리함에서 본인이 수령한다.
2. 특수우편물은 행정실에서 사생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하고, 서명 날인 후 수령한다.

**제17조(화기 및 청소책임)** 입사생은 각자 실내의 화기단속과 청소의무의 책임을 진다.

**제18조(면학분위기 조성)** 입사생은 면학분위기 조성에 협력하여야 한다.

**제19조(외박)** ① 입사생이 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(월~금요일)에 외박을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② 외박을 신청할 때에는 외박신청서에 사유, 목적지, 연락처, 기간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
**제20조(무단외박)**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무단외박으로 처리한다.

1. 관장의 승인 없이 외박한 자
2. 외박을 하고 기일 내에 귀사하지 않은 자
3. 점검시간 이후 귀사한 자로서 보고를 하지 않은 자

**제21조(귀사시간)** ① 입사생은 점검시간(23:00) 이전에 생활관으로 귀사하여야 한다. 단, 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경우 귀사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- ② 시험기간 및 교내행사 등 필요시 관장은 귀사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**제22조(면회)** ① 면회시간은 09:00~21:00으로 한다.

- ② 면회자는 면회 신청부에 기재사항을 정확히 기입한 후 관계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.

- ③ 면회는 지정된 장소에서 해야 하며 사생실 출입을 금한다. 단, 가족이 방문하였을 때에는 관장의 허락을 받아 출입할 수 있다.

**제23조(징계)** 생활관의 공익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들을 준수하지 않을 경

우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.

1. 한 학기 과실점의 합계가 8점 이상이 되었을 경우 다음 학기 입사를 제한한다.
2. 과실점 합계가 10점 이상이면 강제 퇴사시킨다.

**제24조(상점)**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은 상점 10점을 부여하고 별점이 있는 경우 상점과 상계하며, 별점이 없는 경우 다음 학기 입사 선발에서 우선권을 부여한다.

1. 자발선행 :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선행을 하는 입사생
2. 대학과 학사발전에 공이 많은 입사생
3.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고 생활관내 생활태도가 특히 양호한 입사생

**제25조(별점의 경감)** 경고 또는 별점누적 입사생 중 관장의 허락과 본인의 희망 시 소정의 근로봉사를 하여 별점을 일정부분 경감할 수 있다.